자동제어 공사는 설비공사 업역

건물의 쾌적성 추구를 목적으로 제어용 컴퓨터를 이용한 건물 자동화 시스템의 보급이 증가되고 있다.

흔히들 공조설비의 자동제어는 설비공사업계의 업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.

공조설비의 자동제어는 그 방식에 있어서 공기식, 전자식, 전기식으로 분류되며 모든 자동제어 공사가 전기식으로만 제어되는 것은 아니다.

설계에 있어서도 공조설비 설계자가 설계하고 있으며 시공후 조정 및 시운전은 공조설비의 시스템을 알지 못하면 시행할 수 없으므로 시공 또한 설비업자가 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.

전선배관 및 전선이 공사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전기공사업자가 시공해야 할 사항은 아니다.

공조설비의 자동제어는 전기의 전압이 거의가 24볼트(36볼트 이하)로서 36볼트 이하의 2차측 공사는 전기공사의 경미한 공사로 전기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시공할 수 있는 일이다.

전기공사업법 제3조(전기공사의 제한 등) 1.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.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(경미한 공사 등) ①법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"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사를 말한다. 〈개정 83 · 10 · 8. 85 · 9 · 13〉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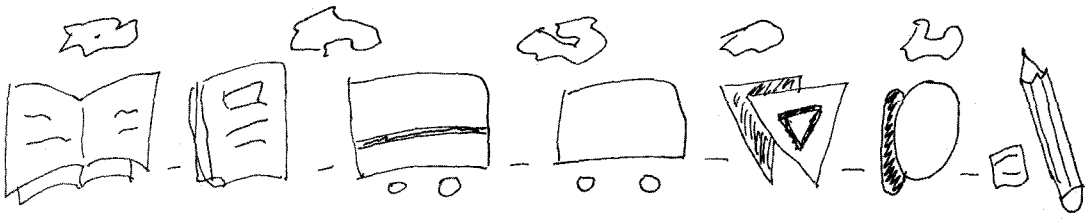
1. 꽂임접속기 · 소케트 · 로우제트 · 시링부르크 · 접속기 또는 나이프스위치 및 기타 개폐기의 보수 또는 교환에 관한 공사
2. 벨 · 인터폰 · 장식전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(2차측 전압 36볼트이하의 것에 한한다)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
3. 전력량계 또는 퓨우즈를 부착하거나 이를 떼어내는 공사
4. 전기기계 · 기구(배선기구를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의 단자에 전선(코오드 캡타이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부착하는 공사
5.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용량이 3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 · 보수공사. 다만, 전기기술자(전기기사 1급 및 전기기사 2급을 포함한다)가 하는 경우에 한한다.